

라운드 테이블 자료집

한일 관계, 어디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묻다

일시 | 2019년 7월 31일(수) 오후 7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사회연구소

목차

프로그램		3
토론1	신한반도체제로의 이행과 한일관계 재구축: 위기를 기회로 / 남기정	4
토론2	한일 관계, 어디로? 토론문 / 임재성	14
토론3	한일 관계, 어디로? 토론문 / 이지평	18
토론4	한일 관계, 어디로? 토론문 / 박정은	22
별첨1	성명 <한국은 적인가?> 번역	26
별첨2	기자회견문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갈등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35

프로그램

- 19:00 사회(10) 김정인 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 19:10 지정토론(40)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임재성 강제동원 소송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상근자문위원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19:50 종합토론(30)
- 20:20 질의응답(20)
- 20:40 폐회

신한반도체제로의 이행과 한일관계 재구축

위기를 기회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I. 위기의 한일관계: 기원과 구조

1. 신한반도체제를 보증하는 기초로서 한일관계

- 신한반도체제란, 한반도가 전쟁과 대립의 무대에서 평화와 협력의 무대로 변화하여 만들어 내는 새로운 질서. 동북아에 ‘두 개의 전후’로 지속되는 전쟁의 극복이 과제.
- ‘두 개의 전후’란, 냉전(샌프란시스코조약체제)과 정전(정전협정체제)
- 2018년에 ‘두 개의 전후’ 체제의 해체 시작.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65년 체제 해체가 동기화
-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을 보증하는 한미일 3각안보협력의 하위동맹으로서 한일관계에서,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정전을 극복하는 남북일 3각 평화협력의 밑변으로서 한일관계로.
- 한일관계의 개선이 아닌 한일관계 재건축

2. 2018년의 동북아시아: 역사적 총위와 지정학적 전선

-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켜 온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종식시키려는 한국과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전제로 성립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일본
- 한반도 정전협정체제를 해석하는 역사적 총위의 불일치가 상호불신을 증폭시켜 온 것이 한일관계에서 2018년의 위기

- 한일 관계의 위기 해소와 극복은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의 해체가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급변시키지 않으며,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의 해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에서 가능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에 동북아시아에 다자간 안보협의 체제를 한일이 함께 구축해 나가는 데에서 한일관계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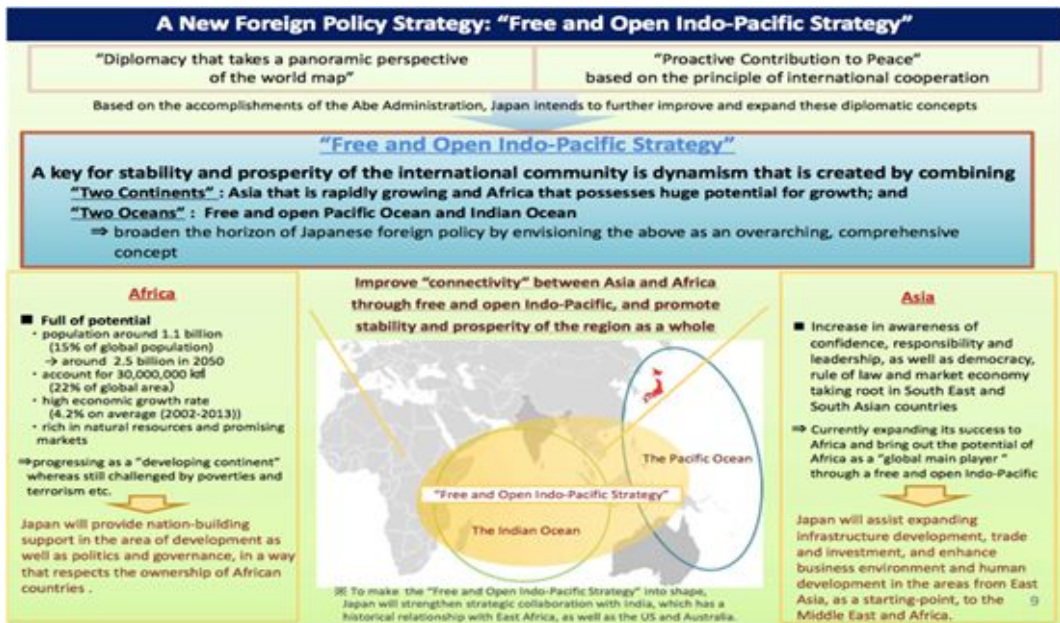
II. 일본의 안보구상과 그 함의

1. ‘희망의 미일동맹’에서 ‘미일동맹 재구축’으로

- 2014년 11월부터 일본 세계평화연구소 발간의 『희망의 미일동맹: 아시아태평양의 해양안전보장』 (출판은 2016년)에서 『미일동맹을 재구축한다: 동아시아 리스크와 안전보장개혁』 (니혼니케이신문, 2017.9.)으로. 한일관계의 냉각화를 감수할 필요, 대북화해에 나서는 한국을 견제

2. 인도태평양 전략

- 2016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케냐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 VI)에서의 기조연설로, 아베 수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발표한 구상/전략
- 1920년대 국제협조주의의 기치 하에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규칙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자를 자처
- 1919년에 대한 한일 인식차가 부활



<Priority Poli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 FY2017>

- 일본의 개발협력 중점과제: 아시아대양주, 아프리카



- 인도태평양전략과 일영/일불 협력



III. 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과제들

1.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한일협력: 북한 비핵화와 북일 국교정상화

- 북한 비핵화 문제의 역사적 연원으로서 1988년 7.7선언.
-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은 한소 한중 국교정상화로 만들어진 불리한 국제환경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려면 운동장의 기울기를 교정해야 함.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북미간 협상 개시와 동시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관건.
- 최소 100억 달러라고 일컫는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 비핵화의 대가가 아닌 조건이며,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어 내는 마중물.
- 이 때문에 중국 동북지방 개발에 관심을 갖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나,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한 북일 접근에 관심을 보임.
- 일본의 환동해 지방자치체들도 지방창생 정책을 전개하는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지름길을 북일수교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심이 큼. BeSeTo 회랑의 확대판인 BePySeTo 회랑에 굽기를 더해주어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유용한 발전의 축이 될 수 있음.

=> 북일 국교정상화는 동북아시아 평화의 공공재.

2. '과거사 청산'의 한일협력: 새로운 100년을 위한 남북일 공동선언

-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의 기초가 1965년의 조약과 협정에 있다는 점을 확인
- 한국 정부는 1965년의 조약과 협정들이 과거사 문제를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
-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경위를 인정하고 평가.
- 이에 입각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남북일 간에 새로운 역사선언을 채택.
 1. 2010년 간담화(菅談話)에서 제시한 일본 측의 역사인식을 반영하여 1910년의 조약의 강제성을 확인
 2. 이에 따라 일본에게 발생한 배상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본의 과거사 처리를 위한 노력들이 실질적 배상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간주
 3. 이를 북일관계에도 적용, 2002년의 북일공동선언에 입각해 실시될 일본의 금전적 지원을 모두 배상의 명목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으로 과거사 문제 총괄
 4. 두 가지 양자간 선언을 하나로 엮어 한국-북한-일본의 공동선언으로 채택
- 2015년 한일 외교장관에 의한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입각해 한국정부에 전달된 10억엔은 이때까지 예치 동결하고, 새로운 역사선언에 입각해 '배상'의 명목으로 전환하여 합의대로 이행.
- 강제동원 문제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되어 성장한 국내 기업과 함께 기금을 설립해 대응하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 참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문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대응. 일본 기업과 피해자의 대화 개시를 위한 물꼬로서 기금 설립
- 강제동원 문제에 1차적 책임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도 책임 발생.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국의 강점 상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그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에 그 책임이 귀속됨. 1948년 건국설을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을 자각할 필요.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청구권 자금을 기초로 성장한 기업들은 이를 환원할 의무.

3. '미래 구축'의 한일협력: 동북아 비핵무기지대조약

- 왜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인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가능성은 동아시아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서 마련
- 동아시아공동체 재건축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의 열쇠
-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은 정치군사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문제
- 민족주의의 부활은 정치군사적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현실제공
- 역사문제를 우회한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 건설 노력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창출

-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현실화
- '핵 없는 북한', '핵 없는 한반도', '핵 없는 동북아'를 연계하여 기회의 상승구조 창출 필요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기초들과 로드맵
 - 판문점선언(2018)의 확인
 - 한일 비핵무기지대 선언
 - 북일 비핵무기지대 선언
 - 한반도-일본 3자간 비핵무기지대 조약 체결
 - 미중러 소극적 안보 의정서 체결

=> $[3(2+2+2)+3]$ "-3 방식

IV. 위기의 심화와 돌파구의 모색

1. 일본 경산성의 7.4 수출규제조치 단행 배경

- '저강도 복합전술'
- 7.4 조치에 대한 냉정한 인식이 필요. 현금화로 인한 손실 발생 이전의 조치라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불일치. 이를 고려하면 보복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 내용은 수출금지나 수출규제라기 보다는 심사규제에 해당하는 것. 3품목으로 시작한 것은

경제보복이 아닌 수단을 경제보복으로 보이게 하는 심리전. 부수적으로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황 관리의 의미도 지님.

- 포괄적 허가에서 개별적 허가로의 변화가 핵심 내용인바, 개별적 허가에 필요한 시일인 90일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개별적 허가에서 불허 결정이 내려질 경우, WTO 위반이 될 가능성. 일본의 조치는 상징적 조치. 양자간 해법을 압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중재안 거부 이후 국제사법재판소로의 이행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음.
- 이후 화이트국가에 남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출관리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충실하며 관련 협의에 응할 필요. 대북제재의 유지를 강요하는 수법. 한국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 일본의 가용수단을 동원한 아베의 레짐체인지.
- 아베와 그 주변의 정책 브레인들의 대한 인식과 정책이 반영됨. 『일미동맹의 재구축』(2017)이라는 전략보고서는, 역사문제로 한일관계가 냉각된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며,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앞서나갈 경우 미국과 협조하여 일본이 브레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구상을 피력. 이러한 대한 인식과 정책구상이 거칠게 드러난 행동.
- ‘고강도 단일전술’로 오독하지 말 것

2. 추가조치 가능성과 대응

- 향후 조치 또한 복합전술로 전개될 가능성 있음. 문재인 정부의 플래그십 정책인 수소경제(1.17. 수소경제 선언, 수소경제를 위해 필요한 탄소섬유는 전량 일본에 의존), AI, 로봇, 의료, 우주산업 등 4차 산업, 태양광 관련 산업을 조준할 가능성.
- 한편 경제 조치에 정치적 압박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할 필요. 예컨대 대북 재제 유지를 요구하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견제하는 국제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 그 결과 국제사회를 긴장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파탄시킬 수도 있음.
- 추가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정치지형과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 반아베 제도적 자유주의자에 대한 접근과 아베 주변의 정치적 현실주의자에 대한 분리 대응, 전통적 평화주의자들과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여당 내 야당인 공명당을 통한 접근, 렌고 등 노조를 통한 접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강소기업을 통한 여론 조성, 경산성과 외무성의 실무진을 상대로 한 실무 외교의 필요성 등.

3.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적극적 해결

(1) 일본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 여론전

- ‘국제법 위반’이라는 공격에 대한 맞대응의 필요성
- 국제법 판례 중에 ‘光華寮事件’를 참조할 수 있음. 국가 간 관계의 범위 밖에 사인 또는 비국가조직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의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사례.
- 일본 외무성 ‘국제법과’의 판단. 개인청구권은 있으나, 소권이 없다는 것. 소권이 없다는 것은 개인이 재판소에 청구할 권리는 있으나 ‘출구’가 없다는 것. 이는 결국 청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
- 일본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이 또한 국제법 위반. 또한 일본 정부가 배상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청구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야 말로 일본이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실행하고 있는 것.
- A급 전범의 야스쿠니 합사야말로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결정적 사례

(2) 대일 역제안

-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해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
- 일본 측의 요청은 청구권 협정 밖에서 일어난 일을 청구권 협정으로 처리하자는 것. 따라서 현 상태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청구권 협정 해석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협의의 개시를 요구.
- 향후 대응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원칙에 입각한 접근을 확인할 필요.
- 대법원 판결은 전시에 조선인을 강제동원해서 노역시킨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인 바, 이런 판단이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에서는 1910년 조약의 원천 무효라는 입장에 입각. 한편,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해석의 불일치가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 일본의 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여 시정하고, 청구권 협정에 대해 엇갈린 양국의 해석을 일치시킬 필요.

(3) 신제안의 제시

- 한국 정부의 6.19 제안(1+1)과 일본 정부의 한국 책임론(1+1)의 사이에서
- 1+1+α가 아닌, 1+1/α. 즉 한일 기업의 민간 수준에서의 자발적 노력에 병행해서, 한국 정부의 책임은 대법원 판결의 이행과 별도 트랙으로 하는 투트랙해법.
- 피해자 구제는 임시정부 100년의 해에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의 책임.
-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신생국가로 건국되었다는 단절론을 배제. 그 판결을 존중한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일어난 ‘징용’ 및 ‘징병’ 등 강제동원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일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법 1조에 따라, 대한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대한민국 정부에 있고, 외국의 강점상태를 용인하여 그 불법행위로 인해 자국민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를 시정하지 못한 책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
-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를 한국 정부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이야말로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에, 임시정부 수립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단절된 적이 없는 우리 법통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 한편 청구권(배상)으로 받은 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되고 성장한 기업들이 이에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의무로 제기됨.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함께 기금을 설치.
- 역제안 이후, 특사파견으로 신제안(1+1/α) 제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해 화해에 응하도록 길을 열도록 유도하고, 협상 국면으로 유인.
- 국내정치와 대일협상의 종합으로서의 대일 국민외교 필요성

4. 참의원 선거 결과와 수출규제조치

(1) 참의원 선거 결과

- 연립여당 과반수, 개헌선 미달, 아베비판의 교두보 마련이라는 결과.
- 국민은 안정을 선택하되 개헌에 대해 균형을 보였고, 신중한 정국운영 요청.
- 한국에 대한 보복적 무역조치는 참의원 선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연금, 소비세 인상, 개헌 등 예봉을 회피하는 간접적 효과.
- 총리관저(경산성)는 압박, 외무성은 대화

(2) 수출규제조치

- 외무성은 대화를 시도하는 역할 분담 가운데, 일본은 출구를 모색.
- 우리 정부는 복합전술에 말리지 말고, 사안을 분리하여 각개 격파

V.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대전환의 시대

(1) 소재 부품산업 자립을 통한 국내 산업구조 대전환

(2) 초당외교를 통한 국내정치 지형 대전환

(3) 65년 체제 재구축을 통한 한일관계 대전환

(4) 신한반도체제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 질서 대전환

“한일 관계, 어디로?” 토론문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소송 담당, 법무법인 해마루)

I. 현 상황에 대한 원인과 사태 인식의 복잡성

1. 원인

- 현 상황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좁혀서 분석(이후 '복잡성'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 2018. 10. 30. 대법원 확정판결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및 매각 절차가 경제보복의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 또한 일본 정부가 제안한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한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 없이 회피하였던 것 역시 중요한 원인
- 역사 수정주의(퇴행적 역사관)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일본 아베 내각은 일본 기업이나 정부의 개입(책임) 없이,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하여왔음. 그 '해결'을 위한 압박의 수단으로 경제보복을 사용하고 있음.
- 확대 해석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보수 정치세력으로의 교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다', '한국 경제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함이다' 등)
- 경제보복의 여러 맥락들을 거시적으로 살필 필요는 있겠지만, 1) 객관적 근거를 갖춘 분석인지 의문이고, 2)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분석인지도 의문.

2. 복잡성

- 2018. 10. 30.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
- 2005년 민관위의 해석(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행사가능하다는 해석) 이후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결정(외교부장관이 청구권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 정부와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 포함/소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위헌), 2012년 대법원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로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과 같은 사법부의 판단은 식민지 불법성 문제를 회피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온전히 주목하지 못했던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한일관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였음.
- 그러나 2012년부터 시작된 2기 아베내각의 강경대응과 한국 정부의 비전 없음이 결합하여, 양국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보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 현상유지를 하거나(사법농단), 피해자를 청산하는 방식(2015년 위안부합의)을 택했음.
- 2018년 대법원 판결확정으로 피해자들은 집행권원이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게 되었음. 1965년 이후 단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

II.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원인에 따른 타계책 및 향후 전망

1.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

- 한국 정부의 대응은 1) 강제동원에 대한 대응과 2)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구별할 수 있음. 후자에 대한 대응은 긍정적으로 평가. 메시지의 일관성과 방식의 적절함이 돋보임(일본의 자충수도 존재). 이 부분은 다른 토론자가 잘 평가해 주실 것으로 믿음.
- 강제동원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간전문가 포함하는 TF 구성하겠다 발표 있었지만, 실제 구성되어 집행되었는지 의문. 상당기간 '사법부 판단 존중하겠다' 이외에 어떠한 메시지, 전략도 확인되지 않았음.

- 피해자들의 대리인들이 일본 기업과 개별 협상을 위한 시도를 지속하는 상태에서, 일본 기업은 일체의 접촉이나 의사소통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와 한국 피해자가 충돌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
- 한국 정부의 안으로 제안된 1+1 제안도 1) 피해자들과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일본기업의 책임인정이 부재하고, 확정판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음. 특히 일본 정부 역시 사전에 한국 정부 안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데 왜 그 시점에 발표하였는지 의문.
- 물론 일본 정부가 판결 이후 일관되게 '한국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이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을 수도 있음. 또한 피해자들의 집행과정에서 한국 정부로부터의 유무형의 압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권리행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게 확인됨.

III.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

1.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

- 경제보복 철회를 위한 불매운동이 진행중. 이에 대한 여러 평가와 우려도 존재하지만, 성숙한 의사표현이라고 느껴짐.
- 1965년 체계를 넘어서는 한일관계를 시민사회가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음. '식민지 시기 피해자들의 인권문제'('침략전쟁의 도구로서 식민지 젊은이들을 착취')라는 프레임을 공론장에 올릴 필요가 있음.
- '전쟁'시기 보이는 여러 부작용들을 지적해야 함. 전쟁이 개시되면 군인들이 의사결정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문제의 본질보다는 전장의 상황만이 보도되며, 내부의 여러 비판들이 '이적행위'로 공격받게 되는데 현재 상황도 유사함.

2. 시민연대의 가능성

- 2019년 일본은 식민지 시기 피해자들의 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동반자일 수밖에 없음. 다만, '일본인 중에도 우리편이 있다'와 같은 도구적 연대를 경계해야 함.
-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간 나오토 담화 등을 이어가는 새로운 선언을 준비해야 함. 한일 시민사회가 먼저 대안선언의 기초를 만들 수도 있을 것.
-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일본 지식인 선언에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한일 관계, 어디로?” 토론문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상근자문위원

현 상황에 대한 원인과 사태 인식의 복잡성

-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 한국의 무역관리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우려 △ 강제 징용 문제로 인한 일본기업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분노 △ 한국 산업 견제라는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것으로 보임.
 -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의 강경우파들의 불정확한 정보가 과도한 측면도 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당국자간 협의가 3년 이상 없었다는 점을 강조
 - 강제 징용 문제로 인해 일본기업의 자산이 경매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작년부터 일본 언론을 통해 일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서 이들이 점차 혐한(嫌韓) 강경우파와 비슷한 방향으로 한국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갖게 됨.
 - 7월 4일부터 포괄적인 수출허가 품목에서 제외된 3개 품목은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는 대표산업이면서 차세대 제품(반도체의 차세대 공정 EUV, 폴더블 OLED)을 집중 타깃으로 했음.
- 한국 산업 견제라는 부분은 강제 징용 문제 등의 핵심적인 쟁점과 비교해서 부차적인 것이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경우파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존재

- 강경우파들은 한일무역 및 기술교류가 한국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왔기 때문에 한국과의 분업 관계를 약화시켜서 일본 산업의 경쟁력, 기술적 우위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임.
 -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첨단 제품에 관한 한일간 기술교류, 한국에 대한 첨단 분야 투자도 규제 및 심사 대상에 포함됨.
 - 심사를 관장하게 될 경제산업성은 그 동안 한국 산업의 발전을 견제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국책 사업으로서 일본기업 연합을 주도해 지원해 왔음. 이들은 그 동안 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의 기술을 모방해 일본기업을 추격 및 능가했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기술정보의 보안 정책을 강화해 왔음.
 - 앞으로는 일본의 핵심소재나 헬스케어, 로봇, 우주 관련 첨단 산업에서 일본의 기술적인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임.
- 또한 이러한 한국 산업 견제 전략은 미국의 중국 산업 견제와 연계되는 측면도 존재
 - 한국에서 중국으로 일본제 첨단 재료가 우회 수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음.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차원에서 일본도 중국에 대한 기술이전, 첨단제품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할 입장임.
 - 단, 일본 산업계로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며, 대중 규제품목의 최소화를 희망. 즉,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초래하는 일본제 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대중 수출규제는 최대한 피하겠다는 것이 일본 산업계의 입장이기도 함.
 -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간에서 무역관리 제도를 협의하고, 앞으로 계속될 한미일간 대중 전략 협력에서 미국의 압력이 작용해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과 관련된 소재, 부품, 기계류의 대중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존재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원인에 따른 타개책 및 향후 전망

- 정치, 외교, 통상, 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사하면서 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게임의 룰의 변화를 볼 때 한국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대일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외무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최근의 대응은 평가됨.

- WTO 일반이사회에 이어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ARF(지역안보포럼) 등에서 계속 외교전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일본과의 양국간 무역관리 제도 협상 등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
 - 일본이 표면상 무역관리상의 문제를 이유로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양국협의로 이것이 해결되었다 하면 일본은 대한국 무역보복의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임. 미국 등 제3국을 포함한 한일협약에서 각종 현안의 해결에 대한 약속과 이행을 통해 타협을 모색할 필요. 일본의 표면적인 이유를 미국을 포함한 한미일 무역관리 제도 협의를 통해 억제
-
- 근본적으로 한일 양국 국민간의 신뢰관계, 협력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특히 양국 협력의 기초가 될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중요
 - 첨단, 소재, 부품, 기계 기술을 가진 일본기업의 유치 및 합작촉진이 중요, 일본기업의 자산을 보장하는 성숙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
-
- 중장기적 차원에서 첨단 소재, 부품, 기계류의 국산화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추진
-
- 물론, 한일 관계가 무역보복과 불매운동, 외교적 갈등 지속 등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경제보복과 갈등이 심화되고 양국 경제 및 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 양국이 크게 타격을 받는 최악 상황으로까지 가야 타협의 기운이 양국 국민들간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음.
 - 아베정권 퇴진(2021년 예정)까지 한일 관계의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며, WTO 제소 등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의 백색국가 문제 해결에 대한 압박도 필요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

- 양국 국민, 시민간의 신뢰관계 형성, 혐한을 주도하는 일본 강경우파를 견제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임.
- 강제징용, 위안부 등 각종 현안에서 일본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함께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을 위한 방향 연구와 협력을 모색
 - 1965년의 한일조약을 기초로 한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이 기반 위에서 새로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 한일간에서 서로 특정 민족을 비방, 중상하는 Fake 뉴스, 혐오 사이트 등 억제
- 양국 관계 증진, 현안 해결을 위한 한일 시민단체간의 공동연구, 연구결과의 정부정책 건의 등도 중요할 것임.

“한일 관계, 어디로?” 토론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베 정부의 적대적 조치, 위태로운 한일관계

- 그 동안 한일관계는 일제 강점기 역사를 봉합한 채 때로는 깔거롭고 때로는 경색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 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점 아래 기업들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시민들의 활발한 왕래가 유지되었던 관계
-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집행 움직임, 위안부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 해산 수순 등에 대한 반발로 경제보복 조치.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반입 의혹도 제기. 고노 다로 외교부 장관 등의 결례 등 우호적인 국가관계에서 생길 수 없는 적대적 조치와 태도.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역사, 경제, 안보 관련 위계적 시각 반영
-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시도를 한국의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타격을 의도한 경제적 이유로 보거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만 볼 수 있을까. 신봉했던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일본 기업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자해적 조치, 기존의 한일관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시각.
- 정치권 일각이나 일본을 잘 안다는 일부 진보 언론인들도 한국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손놓고 일본의 중재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강공으로 나가는 것에 문제제기. 일부는 사실일 수 있으나 지엽적인 진단이자 문제제기
-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모든 수단 강구를 위협하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재판 개입을 요구해왔고, 결과적으로 사법농단으로 이어졌음. 일본 지식인 성명이 설명하듯, 보다 앞서 있었던 위안부 문제 관련 중재위 설치에 일본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볼 때 한국 정부의 무대응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었다는 비판을 적절치 않음.

- 의도가 무엇이었던 아베 정부의 조치는 동아시아에서 발전된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두 국가가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공유하고 협력했던 오랜 관계를 실험대 위에 올려 놓았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아베 정부의 부정적 역할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했다는 점도 환기되어야 함.
- 나아가 일본 극우보수세력이 한국의 경제와 안보의 취약점을 잡아 흔들 수 있다는 사실. 경제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아베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과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이 일본만의 일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것임을 각성하는 계기
- 아베 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주장. 강제징용 관련 민사 재판에서 위자료 청구권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님.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는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국가 동원도 인정하지 않았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고수하라는 주장.
- 오히려 아베 정부가 참담했던 과거사를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가자고 천명했던 일본의 정치적 입장, 즉 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 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 등을 존중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함.

한반도/ 동북아 분단체제의 균열의 힘 vs 현상유지의 힘

- 기존의 한일관계는 한일간의 과거사는 봉합 수준에 두고 한미일 군사협력들을 유지하는 것. 일본 시각에서 한국은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 동북아에서 한반도 분단체제가 확장된 곳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관계가 지속되어 왔음.
- 지난 몇 년 사이 2015년 느닷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합의' 발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양승태 대법원과 강제징용 판결 지연 공모, 사드 배치 등으로 이어짐.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
- 이관후 박사가 최근 참여사회연구소 <시평>을 통해 주장했듯이, 2018년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한 것으로, 1951년 일본을 국제사회에 재등장시키고, 한국을 배제시켰던 '샌프란시스코 협정'과 이를 기초로 맺은 65년 '한일협정'의 모호함을 정면으로 건드렸음.

- 한국 재판부의 판단과 이를 집행하려는 움직임, 과거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향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 한일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일본 측 입장과 부딪히고 있는 것임. 한국과의 관계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줄곧 식민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 해결을 모호하게 봉합시켰던 기존 협정의 전제들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 그러한 협정이 가능했던 구조를 흔드는 것
- 돌이켜보면, 독립 이후 한국 정치 세력의 등장과 독재, 개발의 역사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집권했던 극우보수 세력과 일본의 현 집권 세력은 오랫동안 이해관계 공유해 온 역사. 북에 대한 적대감을 정권을 유지하는 토대로 삼고, 급격한 평화 정세로의 전환 대신 한반도 분단을 선호하는 현상유지 세력이기도 함. 그 극단에 있는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려 시도.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로의 회귀를 지속적으로 모색. 북한 위협 상실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온존시키려는 아베 정권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 한편, 한국은 독재정권에 저항하고 직접 권력 교체를 이룬 시민사회의 민주성과 역동성이 정치외교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이 되기도 함.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배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여론 존재.
- 북한과의 관계,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와의 간극.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논의가 한반도와 동북아 분단체제를 강고하게 유지시켰던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갈등의 장기화, 미래 한일 관계

- 일본 입장 바뀔 가능성 없으니, 한국 정치권과 외교는 그럴 역량이 없으니, 양보하고 일본과 빨리 화해하는 것이 국익이다?
- 한국은 과거사 종결되었다는 일본 입장 수용할 수 있는가, 한국이 일본의 입장 변화를 이끌 수 있는가
- “한국이 적인가” 일본내 서명 7월 31일 오전 10시 현재 4756명 서명.
- 어떤 한일관계를 추구할 것인가. 이웃국가 일본과는 경제 협력, 균형적 외교 불가피, 과거사 해결 위해서도 필요

어떻게 일본과 평화롭고 우호적인 이웃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 시민사회는 평화헌법 개정하려는 아베 정부 군사주의 저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에 공동 연대
- 한국정부는 한반도비핵화 넘어 일본 포함한 동북아비핵지대, 동아시아 공동협력안보, 평화헌법이 동아시아 평화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 강조하며 개정이 한반도와 동북아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필요

성명

<한국은 적인가?>

원문: <https://peace3appeal.jimdo.com/>

이 성명은, 작금의 일한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썼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77인의 목소리를 필두로 발신합니다. 그들끼리도 의견차가 다소 있지만, 바탕은 모두 같습니다. 동감하신다면 아래의 서명란 페이지에서 서명해주시시오. 제1차 모집 종료는 8월 15일입니다.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정하고자 합니다.

일한 관계는 지금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쉬어 머리를 식혀서 냉정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본래, 대립이나 분쟁에는 쌍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번에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들은 일본국 시민이므로, 우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한국 정부의 문제는 한국 시민들이 비판해주겠지요.

쌍방의 자기비판 속에서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만,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성명 한국은 "적"인가」 발의자 일동

2019년 7월 25일

1. 들어가며

우리는 7월 초 일본 정부가 밝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갖는 중요한 의의를 생각하면, 이 조치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나온 직후에는 지난해 ‘징용공’ 판결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복이라고 받아들여졌으나,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는 안보의 신뢰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5일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 한국은 적인가?

국가간에는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의 조치에 대항 조치를 취하면 상대방을 자극하여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침략해 식민지 지배를 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과 대립하더라도 특별하고 신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보이면 어떤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일본의 보복이 한국의 보복을 불러오면 그 연쇄반응의 결과는 수렁입니다. 양국의 민족주의는 당분간 수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빠지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적이 있듯이,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본이 엄청난 혜택을 받아왔던 자유무역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일본 경제에도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내년은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해입니다. 보통 올림픽 주최국은 주변국과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일본은 주최국 자신이 주변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양국 관계가 뒤틀릴뿐만 아니라 일본도 얻을 게 전혀 없는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대화뿐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초 국회 시정 방침 연설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말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하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을 하고 싶다”고 언급한 반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떠오릅니다. 마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과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으로 회담했지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만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이번 조치입니다.

마치 한국을 '적'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잘못입니다.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해가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3. 한일은 미래 지향적 동반자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을 통해 전후 일본은 의회 민주주의하에서 경제 성장을 통해 아시아 원조국이 되는 동시에 평화주의를 지켜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려워할 수 있는 용기를, 또 한국 국민에게는 전후 크게 달라진 일본의 모습을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한국 국민에게는 일본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높지만 일본이 전쟁 전의 역사를 직시하고, 전후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다면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커다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서 금지되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강행했습니다.

4. 한일 조약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은 국제법, 국제약속을 위반했다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 조약"과 그것에 근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 제2조는 1910년 한국 병합 조약 무효를 선언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의 해석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병합 조약이 본래 무효이며, 일본의 식민 지배는 한국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면 일본은 병합 조약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 유효하며 양국이 합의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 지나면서 일본 정부와 국민도 변해갔습니다.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국민의 공통된 인식이 되었습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리고 2002년 “조일 평양 선언”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이 인식을 기초로 2010년 한국 병합 10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도입하여 일본 정부가 한국과 마주하면 나타난 문제를 협력하여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 ‘징용공’ 소송은 민사소송이며, 피고는 일본 기업입니다. 우선은 피고 기업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답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 일본 정부가 등장해 사태를 혼란시키고 결국 국가간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슷한 사례인 중국인 강제 연행 강제 노동 문제는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에 따른 중국 정부의 전쟁 배상 포기 이후에도 2000년 하나 오카(카시마 건설 화해), 2009년 니시마쓰 건설 화해, 2016년 미쓰비시 메트 리얼 화해가 이뤄졌고, 그 때 일본 정부는 민간끼리의 일이라며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일한 기본 조약·일한 청구권 협정은 양국 관계의 기초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상투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해결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도 개인의 보상 청구권을 부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반세기 동안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국 지원, 피폭 한국인 지원 등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개인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궁리하면서 보상을 갈음할 조치를 해왔고,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2015년 말에 합의했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이 평가는 여러가지이고 또 이미 재단은 해산되었지만)도 한국 측의 재단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개인에게 국비 10억 엔을 내민 사례와 다름 없습니다. 한편 한국도 노무현 정부 시절 식민지 피해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한다면 논의하여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재 위원회 설치를 놓고 "대립" 하고 있지만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에 먼저 주목할 것은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측은 중재 위원회의 설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근거로 하여, 해결을 위한 성실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 및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 열어놓은 한일 문화 교류, 시민 교류는 엄청난 규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BTS(방탄소년단) 등, K-POP의 인기는 압도적입니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일본의) 여고생은 한국에 살고 있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고, 700만 명이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우익 등이 아무리 외쳐도,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서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베 수상은, 일본 국민과 한국민의 사이를 갈라, 양국민을 대립 반목 시키는 일은 그만두어 주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손을 잡은 채 토론을 계속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2019년 7월 25일

와다 하루키(東京大学名誉教授)외 78명

기자회견문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과거사 부정, 경제 보복, 한일 갈등 조장 아베 정권 규탄한다

진실과 정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일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과거 일제와 그에 부역한 기업들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이를 인정한 우리 최고법원의 판단과 이에 입각한 정부의 정당한 조치를 가로막기 위해 수출 규제 등 부당한 경제보복과 정치외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한국정부의 조치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를 한 가해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 개개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정부의 행정조치는 협약 위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뿐더러 국가폭력 피해자의 진실, 정의, 배상, 치유에 대한 보편적인 인권규범과 완전히 합치한다. 반면, 이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조치를 가로막으려는 경제적 보복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과 국제무역규범의 기초를 뒤흔드는 폭거다. 일본 아베 정권의 조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과 국민들 일반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대한 도발이다. 아베 정권은 뒤늦게 한국의 전략물자 통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으나 이 또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은 한국을 아예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추가적인 제재도 예고하고 있어 도발을 위한 도발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과거 불법행위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 편법적 보복행위를 총동원하는 아베 정권의 무도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자발적인 항의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주장을 부정하면서 무도한 경제적 도발을 자행한 아베 정권에게 있다. 아베 정권은 일련의 경제적 보복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에 협력해야 한다.

더욱이 아베 정권이 과거사 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헌법 9조의 개정하여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지닌 군사대국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일본 평화헌법은 군국주의 침략의 과거사로 퇴행하지 않으려는 일본 시민들의 결의이며, 한국을 비롯한 이웃 나라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었다. 아베 정권은 이 안전장치를 해체하여 전쟁 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 심지어 아베 정권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해서라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계기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70여년 만에 어렵게 본격화한 평화협상에 장애를 조성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적 구상을 막아내는 것은 일본과 한반도, 동아시아와 지구촌 모든 시민들의 책무다.

정부에 제안 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근거 없는 경제적 보복조치에 맞서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침략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의 권리 실현을 위해 공권력이 해야 할 모든 책무를 흔들림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베 정권이 공언하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와 더불어 전방위 공공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일본 정부와의 군사협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군사동맹수준의 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속하면서 아베 정권이 제안하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군사협력 구상에 한국이 하위파트너로 편입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할 한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구상이 역내에서 일으키고 있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아시아에 평화공존의 협력체제를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치권에 요구한다. 국민 권익을 옹호하는 민주적 대의기구의 구성원답게 아베 정권의 과거사 부정, 경제적 보복, 한일 갈등 도발 행위에 맞서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정치권은 자극적이고 감정적 색깔공세와 편가르기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등 일제 불법행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사법주권을 지키며, 일본 아베 정권의 무도한 경제적 보복조치에 항의하고 경제적 주권과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한일의 경제협력 당사자 및 세계 무역질서를 상대로 아베

정권이 취하고 있는 자해적인 규제조치에 항의하고 이를 철회시킴으로써 정의와 평화에 바탕을 둔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초당적인 정책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동아시아라는 터전 위에서 서로 의존하며 더불어 살아갈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는 이미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이미 공유하고 향유하고 있다. 한일 시민사회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해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이 조장하는 편견에 맞서, 국가의 폭력과 일탈에 의해 침해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경을 넘어 연대하자. 동아시아 평화 공존의 가장 중요한 기동인 일본 평화헌법 체제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손을 맞잡자. 우선, 모두에게 불행했던 과거를 반성 없이 정당화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파괴하고 시민과 시민간의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아베 정권의 경제적 보복조치를 철회시키고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중심에 두고 협력할 수 있게 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8.15 한일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올해는 3.1운동 100년을 맞는 해이다. 100년 전 우리는 식민지배에 맞서 정의와 인도를 위해 거족적으로 떨쳐 일어서되 매사에 배타적 감정의 치우침이 없이 항거하자는 정신을 독립선언과 공약3장으로 천명하고 실천했었다. 광복 74주년을 맞는 오는 8월 15일, 3.1운동 그 저력으로, 촛불 그 기억으로 모두 함께 광장에 모이자. 진실, 정의, 평화, 진정한 공존을 위한 촛불을 밝히자. 또한 그 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진정한 공존의 미래를 위한 시민의 촛불이 따로 또 함께 밝혀지기를 희망하며 일본의 동료시민들에게도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2019년 7월 2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녹색교통운동 / 녹색연합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민생경제연구소 /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생태지평 / 여성환경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참여연대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투명성기구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한국YMCA전국연맹 / 흥사단 / KYC

참여연대
토론회 자료집
한일 관계, 어디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묻다

발행일 2019. 7. 31
발행처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 장은주 교수)
담당 김건우 간사 02-6712-5248 ips@pspd.org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포스팅 링크 있으면 걸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온라인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 (통인동)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 채널 안내\(SNS·뉴스레터·보도자료 수신 등\)](#)

